

의안 번호	제3269호
----------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7월 3일 김포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7월 11일
-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7월 21일
- 라. 의 결 일 자 : 2023년 7월 21일

2. 제안이유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을 신설하여 출산 후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함.

3. 주요내용

- 가. 출산축하금 지원 예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6항)
 -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 사항 규정
-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신설(안 제3장)
 -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예외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 안 제4조제1항뿐만 아니라 제4조제3항에서도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안 제6조제1항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를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7조(지급제외)에 제2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항(①)을 별도 표기하고 있어 해당 표기를 삭제해야 함.
- 제3장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 안 제2조제6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고 정의했음에도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기재하여 조례안의 통일성과 단어의 중복 방지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에게 정부 지원금액에 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고, 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산모에게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취지이나,
- 안 제10조제1항제1호의 내용이 모호하여 지원대상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주요 지원내용]

구 분	보건복지부 소득 기준 초과 가정	보건복지부 소득 기준 이하 가정
정부지원금	없음	태아유형, 소득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김포시] 정부지원금에 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	-
본인부담금	[김포시] 소득기준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의 형식상 발견된 오류를 정비하고 조례안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문을 보완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주문사항 : 단순 오타, 인용 조항 기재 착오 등 조례안의 형식상 문제점을 최소화할 것을 제222회, 제223회 임시회 등 이전 회기에서 여러 차례 주문했으나 여전히 다수 발견되고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형식적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개정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함.

11.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수정안 1부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269호
----------	--------

제출년월일 2023. 7. 12.
제출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안 제4조제3항에도 있어 안 제6조제1항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를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수정함.
- 안 제7조, 안 제9조는 단일 조항이므로 제1항(①) 표기를 삭제함.
- 안 제2조제6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고 정의했으므로 조례안의 통일성과 단어의 중복 방지를 위해 안 제10조제1항제1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로 수정함.
- 안 제10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고자 조문을 문장으로 보완함.

2. 주요내용

-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 인용 조항 추가[제4조제1항→제4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6조제1항)
- 단일조항의 제1항(①) 표기 삭제(안 제7조, 안 제9조)
- 정의 규정에 따라 용어 정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안 제10조제1항제1호)
- 지원대상 명확화를 위한 조문 수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건강관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건강관리:”로, “출산가정”을 “출산가정에 지원한다”로 한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적용례) 제9조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신생아 건강보험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신청) ① <u>제4조제1항</u>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7조(지급제외) ① (생략)</p> <p>제9조(지원대상) ① (생략)</p> <p>제10조(지원내용)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산모·신생아 <u>건강관리 서비스이용권</u>: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u>출산가정</u></p> <p>2. (생략)</p> <p>② (생략)</p> <p><u>제14조</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보칙</u></p>	<p>제6조(지원신청) ① <u>제4조제1항</u> 및 <u>제3항</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급제외)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9조(지원대상)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10조(지원내용) ① ----- -----.</p> <p>1. ----- <u>건강관리</u>: ----- ----- ----- <u>출산가정</u>에 지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3조</u> (현행 제14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신 설>

제15조 · 제16조 (생 략)

제4장 보칙

제14조 · 제15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5조의18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분위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서비스 기준가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2장 임신·출산축하금 지원

제3조(지원내용)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2. 출산축하금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②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③ 임신·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④ 재혼 후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들을 합산하여 정한다.

⑤ 신생아가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순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등 증명서류 확인 후 지원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시에 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임신·출산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50만원
2. 출산축하금: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지

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임신·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 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9조(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지원내용)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에 지원한다**.
2. 본인부담금: 제9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지원대상 여부확인 등) ① 시장은 신청서가 확인되면 행정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9조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확인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원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제13조(본인부담금 신청·지원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② 시장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비용을 심사한 후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5조(지원의 중단)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적용례) 제9조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신생아 건강보험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